

정 관

사단법인 자유경제실천연합

제 정: 2006.4.27
시 행: 2006.5.10
개 정: 2006.8.17
개 정: 2007.5. 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자유경제실천연합” (이하 본연합”)이라 칭하고 “자실연” 으로 약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Citizens’ Coalition for Free Economics(CCFE)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 연합은 자유민주 이념 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자유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통하여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본 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통합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2. 계층간 갈등구조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3. 청년과 노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유관기업, 단체와 협력.
4.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운동.
5. 홍보선전 활동.
6. 법률, 조례 개폐 및 청원 활동.
7.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등의 실시.
8. 기타 본 연합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 연합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개인회원은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
2. 단체회원은 본 연합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기업, 학교, 종교계 등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연합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연합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5. 본 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제명)

1. 본 연합의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연합의 목적이나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8조(기구)

1. 본 연합에 총회, 이사회, 사무처를 둔다.
2.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3. 본 연합의 분야별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둔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회장 : 1명
2. 공동대표 : 10명 이내
3. 이사 : 20명 내외
4. 운영위원 : 30명 내외
5. 각급 전문위원회 위원장 : 각1명
6. 감사 : 2명
7.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선임) 본 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하고 임기 만료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일에 종료된다.
3.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본 연합의 임원으로써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연합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 시켰을 때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불성실 등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3. 정관 및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

제13조(임원의 사임)

1. 임원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공동대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임서는 사무국에 접수됨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보선) 본 연합의 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궐 선임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 의 직무)

1. 공동대표 회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공동대표 회장을 보좌하고, 공동대표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회장이 지명한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이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 한다
 - ①본 연합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①호 및 제② 호의 감사 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 하는 일.
 - ④ 제③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 연합의 재산사항과 회계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공동대표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사무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당연직 간사가 되며.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를 총괄 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1.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대표 회장이 추대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 성)

1. 본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기 능)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임에 관한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공동대표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거나 공동대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제척사항)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법인과 이사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 사회

제22조(구 성) 본 연합의 이사회는 공동대표 회장,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기 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임원선출 및 해임, 회원제명의 발의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⑤ 사무처장의 임면 사항.
 - ⑥ 본 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본 연합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2. 제1항의 각호의 기능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집행 후 추후 이사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24조(소 집)

1.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의제들을 서면으로 각 이사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정관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 연합을 지원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공동대표 회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27조(전문위원회) 본 연합에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전문위원회 별로 간사장을 두며.간사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한다.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활동계획 및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재 원) 본 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보조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29조(재정관리)

1. 본 연합의 재정은 사무국에서 책임관리 하되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금 하여야 한다.
2. 본 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련에 따른다.
3.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30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1. 각 전문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심의 조정하여 총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정기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 산)

1. 각 전문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서는 제1항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와 사업실적을 취합하여 총괄 예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임임원은 보수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비상임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처

제34조(조 직)

1. 본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 회장이 임·면한다.

제35조(직원보수 등) 사무처 직원에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정관개정) 본 연합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해 산)

1. 본 연합이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산을 한다.
 - ①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 ②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제①항 제②항에 의한 해산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정리) 본 연합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또는 본 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개정:2006.8.17)

제39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연합의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연합의 개정된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한다.